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은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며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형, 여행레저형, 차량이용형 중 한 개 이상 선택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은 남자와 여자의 보장금액이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II.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보장성보험
- 개인형

명칭	세목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	일상생활형
	여행레저형
	차량이용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년 만기	전기납	만20세~70세	연납

3. 가입한도

주계약(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 : 10만원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Ⅲ.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2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20만원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30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여행레저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300만원 x 해당 장애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50만원 x 해당 장애지급률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6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만원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600만원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800만원 x 해당 장애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400만원 x 해당 장애지급률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6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800만원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600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차량이용형]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70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35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4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700만원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75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이 아닌 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500만원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Ⅳ.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율 적용이율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의 적용이율은 연 2.5 % 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남자	여자
재해장해율(단일률)	0.000234	0.000126
재해사망률(단일률)	0.000263	0.000084
무배당 예정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재해 장해율(단일률)	0.000008	0.000005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Ⅴ.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영 HANA 상해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VI.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율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예시

[일상생활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40세, 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000	750	75.00%	1,000	750	75.00%
6개월	1,000	500	50.00%	1,000	500	50.00%
9개월	1,000	250	25.00%	1,000	250	25.00%
1년	1,000	0	0.00%	1,000	0	0.00%

[여행레저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40세, 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00	75	75.00%	100	75	75.00%
6개월	100	50	50.00%	100	50	50.00%
9개월	100	25	25.00%	100	25	25.00%
1년	100	0	0.00%	100	0	0.00%

[차량이용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40세, 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000	750	75.00%	1,000	750	75.00%
6개월	1,000	500	50.00%	1,000	500	50.00%
9개월	1,000	250	25.00%	1,000	250	25.00%
1년	1,000	0	0.00%	1,000	0	0.00%

[일상생활형 + 여행레저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40세, 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100	825	75.00%	1,100	825	75.00%
6개월	1,100	550	50.00%	1,100	550	50.00%
9개월	1,100	275	25.00%	1,100	275	25.00%
1년	1,100	0	0.00%	1,100	0	0.00%

[일상생활형 + 차량이용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40세, 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2,000	1,500	75.00%	2,000	1,500	75.00%
6개월	2,000	1,000	50.00%	2,000	1,000	50.00%
9개월	2,000	500	25.00%	2,000	500	25.00%
1년	2,000	0	0.00%	2,000	0	0.00%

[여행레저형 + 차량이용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40세, 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100	825	75.00%	1,100	825	75.00%
6개월	1,100	550	50.00%	1,100	550	50.00%
9개월	1,100	275	25.00%	1,100	275	25.00%
1년	1,100	0	0.00%	1,100	0	0.00%

[일상생활형 + 여행레저형 + 차량이용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40세, 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2,100	1,575	75.00%	2,100	1,575	75.00%
6개월	2,100	1,050	50.00%	2,100	1,050	50.00%
9개월	2,100	525	25.00%	2,100	525	25.00%
1년	2,100	0	0.00%	2,100	0	0.00%

Ⅶ. 보험가격지수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40세]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무)영 HANA 상해보험 일상생활형	1	1	103.6%	92.1%	10
(무)영 HANA 상해보험 여행레저형	1	1	86.1%	84.4%	10
(무)영 HANA 상해보험 차량이용형	1	1	105.9%	100.9%	10
(무)영 HANA 상해보험 일상생활형 + 여행레저형	1	1	101.7%	91.4%	10
(무)영 HANA 상해보험 일상생활형 + 차량이용형	1	1	104.7%	96.3%	10
(무)영 HANA 상해보험 여행레저형 + 차량이용형	1	1	103.7%	99.1%	10
(무)영 HANA 상해보험 일상생활형 + 여행레저형 + 차량이용형	1	1	103.6%	95.7%	10